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1134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최단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404,8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4,88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47,349원을 6,052,230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은 F에게 대출하였고, C은 F의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행은 파산하였는데, 파산채무자 E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7. ‘C은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19.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8257호,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경매신청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1994. 5.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21. 3.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C은 202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2021. 9.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C과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금액 45,499,315원(= 원금 1,100만 원 + 이자 34,499,315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채권금액 30,188,493원(= 원금 2,000만 원 + 이자 10,188,493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이 2022. 10.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052,230원 중 3,647,34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2,404,881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원고는 종전 청구취지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2. 10.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11. 23.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C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C은 2020.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2,404,8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4,88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47,349원을 6,052,2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해당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2,404,8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보았고, 달리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가 위 2,404,881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 중 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3. 2. 이전까지 C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은 2019.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C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20. 2.경 위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추가 대여 당시 합의한 대로 피고의 대여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6. 30.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어 피고의 악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